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3가단7015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6,043원과 그중 9,699,666원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최보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렌트), 신기술 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시설대여(리스,렌트)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D (이하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자입니다.

2. 자동차 시설대여(리스,렌트)계약의 체결

1) 채무자와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시설대여(리스,렌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① 계약일 : 2020.11.02
- ② 약정기간 : 60 개월
- ③ 월납부액 : 882,700 원
- ④ 연체이율 : 24 %
- ⑤ 잔존가치 : 24,174,000 원
- ⑥ 모델명 : -
- ⑦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 ⑧ 기타채무 :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2) 만약 소외 주채무자에게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채권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소외 주채무자는 시설대여(리스,렌트)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 경우 연체 월납부액과 별도로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주채무자는 시설대여(리스,렌트)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채무자가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습니다.

3) 같은 날 채무자는 위 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3. 시설대여(리스, 렌트)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월납부액을 연체한 시점부터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연체 중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체된 월납부액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시설대여(리스, 렌트)계약이 해지됨을 통지(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연체된 월납부액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시설대여(리스, 렌트)계약은 해지(기한이익을 상실)되었습니다.

4. 청구금액

- 소제기 이후 피고가 리스 차량의 반납, 정산을 요청 함에 따라 2023.05.02.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처리 하였습니다.(갑제4호)
- 계약해지, 정산 이후 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2023.05.16. 기준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3.05.02. 계약 해지, 정산 시에는 최종 정산금액이 9,699,666원 이었으나 2023.05.16. 청구취지 변경시에는 지연배상금이 6,377원 추가 발생으로 9,706,043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갑제3호).

구 분		계약해지, 정산시 (2023.05.02)	청구취지변경 (2023.05.16)	비 고
기본정산	리스료(당월+연체)	4,226,968	6,377	
	지연배상금	131,541		
	송무비	381,218		
	A. 소제(VAT포함)	4,739,727		
특별정산	승도해지수수료	15,098,899	9,699,666	
	초과운행부담금	1,053,040		
	B. 소제	16,151,939		
고객반환금	C: 리스보증금	11,192,000		
합 계	(A+B-C)	9,699,666	9,706,043	

1) 종도해지수수료(리스약본 제24조, 갑제1호중 리스계약서 7페이지)

중도해지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율

$$43,139,713 \times 35\% = \underline{15,098,899\text{원}}$$

•미회수원금 : 2023.05.02. 기준 43,139,713원(2023.04.15. 기준 43,673,261원)

*손해배상율 = 35% (국산차, 계약기간 60개월, 경과개월수 30개월)

【더희수원급 전산화면】-2023.04.15일 기준 : 43,673,261원

[illegible]

2) 초과운행 부담금 (리스약관 제23조, 갑제1호종 리스계약서 7페이지)

초과운행 부담금 = 초과운행거리 X Km당 초과운행료

준작은행료 : Km당 G90, EQ900 120원, 제네시스(G90제외), K9 100원.

기타차종 80원

- 초과운행거리(13,163) X 부과기준액(80원) = 1,053,040원

